

산업안전 Q&A

Q

도급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30억짜리입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청에서는 최소한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 중 자격이 없는 1인을 안전관리자로 정하고 공사 기간 중에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안전관리자의 겸임 및 중복 가능 여부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현장소장을 안전관리자로 중복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공사 하도급계약 내용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지 여부, 그 자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그 업무에 전념토록 하여 타 업무와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상 겸임할 수 없음도 알려 드립니다.

Q

사업주는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교육·착용지시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데 유독 1인의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착용을 지시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는 머리숱이 부족한데 안전모를 쓰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모자를 쓰고 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위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경우 당사 제조작업 중 일부분에 큰 지장이 있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로 질의를 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한 비래·낙하 사고가 발생시 누구의 과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에 대하여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규에 따라 처리하시되,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주의 책임은 물론 해당 근로자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내에 있는 기숙사 바로 옆은 개울이 흐르는데(기숙사 바로 옆이며, 개울은 6m아래에 위치함)당 사업장은 전혀 난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난간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숙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 포함되므로 기숙사 옆의 개울에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추락예방조치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교육장용 에어컨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당사의 공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발주자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건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 전액 인정 되는 바,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로 근로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코자 안전모용 자외선 차단제(일명 그늘이)를 지급코자 하는데 안전모용 자외선 차단제(일명 그늘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0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전모용 자외선 차단제(일명 그늘이)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토록 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